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2148호
2025년 9월 16일
화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|
| ○ 공 고 제 1727 호 |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·열람 | 도 시 재 생 과 | 2 |
| ○ 공 고 제 1734 호 |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
공시송달 공고 | 자 동 차 관 리 과 | 4 |
| ○ 공 고 제 1736 호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자 동 차 관 리 과 | 6 |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1727호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·열람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453-2954)에 갖추어 놓았으며,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9. 16.

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35-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
- 명칭: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외 도시계획시설사업

3. 사업규모

- A = 66㎡
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이한준
- 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

5.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26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
합 계 (2필지)				17,572.6	66				
1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	625-32	도	9,341	21	인천 광역시	-	-	
2	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	635-1	도	8,231.6	45	한국토지 개발공사	서울 강남구 논현동 71-2	등기부등본 조회불가	

7.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: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
8. 열람 장소

- 남동구청 도시재생과(☎453-2954,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)

9. 관계 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1734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
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29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 부과),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17조(과태료부과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과태료 부과고지서)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(등기)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『행정 절차법』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5. 9. 16.

남 동 구 청 장

1. 공 고 명: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공시송달
2. 대 상 자: 91라1059 외 1건 (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자)
※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.
3. 공고기간: 2025. 09. 16. ~ 2025. 10. 02. 까지
4. 공고내용
 - 가. 납부장소: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
 - 나. 부과근거
 -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[별표 2]
 -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
 - 다. 이의신청: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)
 - 라.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(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)
 - 가산금이 최고 75% 부과(익월까지 가산금3%, 그 후 증가산금 매월1.2%)됨
 - 체납처분: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
5. 문 의 처: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(☎ 032-453-2824)

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

연번	차량번호	납부자명	주소	내용	반송일	과태료
1	91라1059	옥**외1(이**)	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***, ***동 ****호	등화장치 임의설치 고지서	2025.03.07.	30,000
2	경기부천사0335	C** **** P***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***번길 *, ***호	등화장치 임의설치 고지서	2025.05.09.	30,000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5-1736호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반송분
공시송달 공고
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6조,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5. 9. 16.

남 동 구 청 장

1. 공고대상

성 명	차량번호	주소	처분의 원인된 사실	과징금	반송사유
남*모	인천32바**37	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	사업구역 외 영업	200,000원	기타

2. 공고명칭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3. 공고기간 : 2025. 9. 16.(화) ~ 10. 2.(화) 16일간

4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
5. 납부기한 : 2025년 10월 10일

6. 기타내용

가. 과징금(과태료)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나. 납부기한까지 과징금(과태료)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의 가산금을 징수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의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
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.
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(032-453-2914)로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